



# 새수영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관의 장

## 수영구보 호외 제245호 2013.03.22(금)

고 시

○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02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· 발행 : 수 영 구      · 편집 : 문화공보과 (610-4071~3)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3-33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3월 22일

수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수영구 수영로611번길 56외 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고시일/폐지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/폐지사유
별지조서 참조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(☎051-610-4761)에 문의 또는 수영구청 홈페이지(www.suyeong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3.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**【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내역】**

연번	종전주소	1.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고시일	2. 도로명주소 부여사유
1	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647-7	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1번길 56	2013.03.22	신규(신청)
2	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36-47	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29번나길 7-1	2013.03.22	신규(신청)
3	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68	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252번길 15	2013.03.22	신규(신청)
4	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070-10	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변영로38번길 95	2013.03.22	신규(신청)
5	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0-154	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18번길 9-15	2013.03.22	신규(신청)